

4. 신청인이 법 제7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 
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  1. 운행구간의 기점·종점·정차역
  2. 여객운송·화물운송 등 철도서비스의 종류
  3. 사용할 철도차량의 대수·형식 및 확보계획
  4. 운행횟수, 운행시간계획 및 선로용량 사용계획
  5. 당해 철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내역과 조달방법(공익서비스비용 및 철도시설 사용료의 수준을 포함한다 )
  6. 철도역·철도차량정비시설 등 운영시설 개요
  7. 철도운수종사자의 자격사항 및 확보방안
  8. 여객·화물의 취급예정수량 및 그 산출의 기초와 예상 사업수지
-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에의 적합여부, 법 제7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의 유무 및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철도사업의 면허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사업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  
[<개정 2008. 3. 14., 2013. 3. 23.>](#)
-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사업면허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철도사업면허대장에 이를 기재·관리하여야 한다.[<개정 2008. 3. 14., 2013. 3. 23.>](#)

**제4조(철도사업의 면허기준)** 법 제6조제4호에서 "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"이라 함은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. [<개정 2008. 3. 14., 2013. 3. 23.>](#)

**제5조(운송 시작의 의무)** 철도사업자가 법 제8조 단서에 따라 운송 시작일의 연기 또는 운송 시작기간의 연장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운송 시작 예정일과 그 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운송 시작일 연기(운송 시작기간 연장) 승인신청서에 관계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[<개정 2008. 3. 14., 2013. 3. 23., 2014. 12. 10.>](#)

[[제목개정 2014. 12. 10.\]](#)

**제6조(여객 운임·요금의 신고)** 「철도사업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3조제1항에 따른 여객 운임·요금의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. [<개정 2016. 6. 30.>](#)

[[제목개정 2016. 6. 30.\]](#)

**제7조(철도사업약관의 신고 등)** ①철도사업자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사업약관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철도사업약관신고(변경신고)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[<개정 2008. 3. 14., 2013. 3. 23.>](#)

1. 철도사업약관
2. 철도사업약관 신·구대비표 및 변경사유서(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)
- ②제1항에 따른 철도사업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[<개정 2016. 6. 30.>](#)
  1. 철도사업약관의 적용범위
  2. 여객 운임·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
  3. 부가운임에 관한 사항
  4. 운송책임 및 배상에 관한 사항
  5. 면책에 관한 사항
  6. 여객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
  7. 화물의 인도·인수·보관 및 취급에 관한 사항